



중국의 공정경쟁심사제도 실시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I. 서론

중국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등 5개 중앙정부부서는 2017년 10월 26일 “공정경쟁심사제도 실시세칙(잠정)” (公平竞争审查制度实施细则 (暂行)) (이하 “실시세칙”이라고 약칭함)을 반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공정경쟁심사제도는 2017년 10월에 있었던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시장진입에 있어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전면적인 실시와 시장의 통일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정과 방법의 정리와 폐지, 민영기업의 발전 및 시장주체의 활력을 증진시키기로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16년 국무원이 “시장체계건설 중에 공정경쟁심사제도의 수립에 관한 의견”(关于在市场体系建设中建立公平竞争审查制度的意见) (이하 본문에서는 “의견”이라고 약칭함)을 반포하여 공정경쟁심사제도의 수립을 정식으로 선언하여 지금까지 단계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는데 본 실시세칙을 통해 공정경쟁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실시세칙은 이러한 공정경쟁심사 업무의 순조로운 전개와 공정경쟁심사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반독점법과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에 제정된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실시세칙의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II. 공정경쟁심사 실시세칙의 구체적인 내용

1. 공정경쟁심사제도의 의미와 업무분장

가. 공정경쟁심사제도의 의미

행정기관과 법률법규에 따라 공공사무 관리기능을 보유한 조직(이하 “정

책제정기관"이라고 통칭함)이 시장진입, 산업발전, 투자유치, 입찰경매, 정부조달, 경영행위규범, 자격기준 등과 같은 시장주체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규장, 규범성문건과 기타 정책조치(이하 "정책조치"라고 통칭함)를 제정할 때에는 공정경쟁심사를 진행해야 하여 이러한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제2조). 공정경쟁심사를 통해 경쟁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책조치를 반포할 수 없으며 관련 요건에 부합된 후에 반포할 수 있습니다.

나. 공정경쟁심사의 업무분장

여러 부서가 연합하여 제정 및 반포하는 정책조치들은 그 중에 선임부서에서 경쟁심사를 책임지고 다른 부서들은 각각의 직무상의 책임범위 내에서 공정경쟁심사에 참여합니다(제2조). 행정법규와 국무원이 제정한 정책조치, 정부부서에 기초작업의 책임이 있는 지방성법규는 해당 담당부서가 법규의 기초작업 과정에서 본 실시세칙에 따라 공정경쟁심사를 진행하고 공정경쟁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에 제출해서는 안됩니다(제3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 법제사무처, 재정부, 상무부, 공상총국은 관련부서와 함께 공정경쟁심사업무부서간 연석회의제도를 수립하고 공정경쟁심사 관련 업무를 통합, 협조적으로 진행하며 공정경쟁심사제도의 추진에 대한 거시적인 지도업무를 담당합니다. 지방의 각급인민정부는 공정경쟁심사 연석회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업무협조 시스템(이하 "연석회의"라고 통칭함)을 마련하고 해당지역에서의 공정경쟁심사 업무의 통합, 협조를 담당합니다(제4조). 그리고 각급 공정경쟁심사 연석회의는 매년 상급 공정경쟁심사 연석회의에 해당 지역의 공정경쟁심사제도의 실시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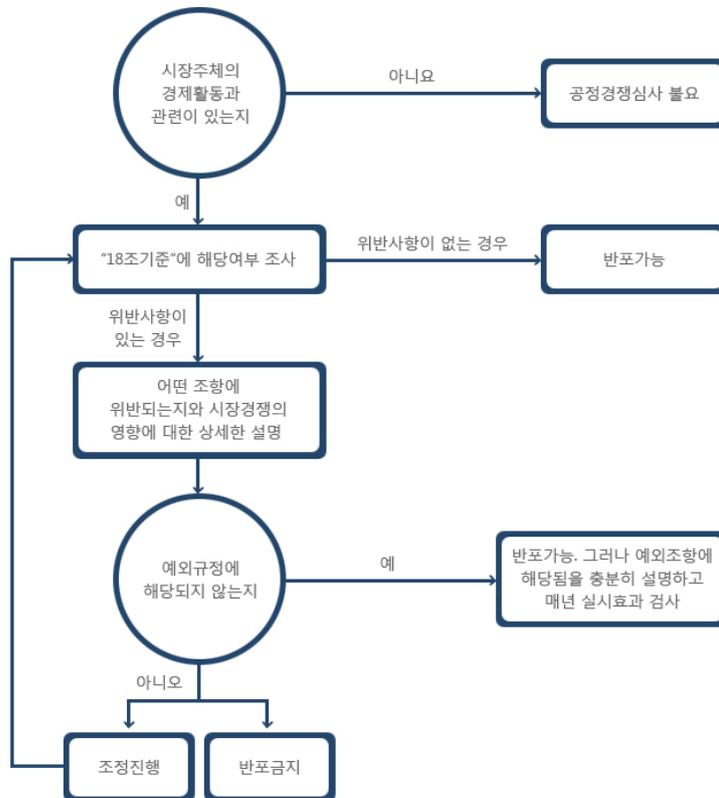
2. 공정경쟁심사의 시스템과 절차

가. 공정경쟁심사 시스템

정책제정기관은 완비된 자체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담당기구와 심사 절차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공정경쟁심사는 정책제정기관 내의 구체적인 업무기구가 담당할 수도 있고 또는 정책제정기관이 지정한 독립된 특정기구가 통일적으로 담당할 수도 있으며 기타 방식을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제5조). 한편 각 지역, 각 부서가 독립적인 전문기구에 위탁하여 정책조치에 대한 공정경쟁심사와 정기평가에 협조하게 하는 것을 장려합니다(제13조).

나. 공정경쟁심사 절차(제6조)

공정경쟁심사의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정책제정기관이 실시하는 공정경쟁심사는 위 도표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이해관계인의 의견 또는 사회의 공개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서면심사 결론 중에 의견수렴상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공정경쟁심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심사결론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관련시장 경쟁에 참여하는 경영자, 업/다운스트림산업의 경영자, 소비자와 정책조치로 인해 시장경쟁에 공정한 참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타 시장주체를 의미합니다.

반포 전에 비밀유지가 필요한 정책조치에 대해서는 정책제정기관이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제7조). 정책제정기관은 공정경쟁심사과정에서 전문학자, 법률고문, 전문기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청취한 의견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의 결론부분에서 관련 상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제8조).

정책제정기관은 공정경쟁심사 중에 부딪히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관한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반독점법 집행조직에 대해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반독점법 집행조직은 정책제정기관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자문의견을 제공합니다(제9조).

정책제정기관이 공정경쟁심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논란이 많거나 또는 부서간의 의견 일치가 힘든 문제에 대해서는 동급 공정경쟁심사 연석회의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연석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규칙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조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책제정기관은 상급기관의 결정을 요청합니다(제10조).

다. 공정경쟁심사의 후속조치

정책제정기관은 매년 공정경쟁심사 진행상황에 대한 결산을 하고 다음 해 1월 31일전에 서면결산보고를 동급 공정경쟁심사 연석회의 사무처에 제출합니다(제11조). 공정경쟁심사 후에 반포된 정책조치에 대해서 정책제정기관은 그것이 전국의 시장의 통일과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전국의 시장의 통일과 공정경쟁에 장애가 된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시에 폐지하거나 또는 수정 개선하여야 합니다(제12조).

3. 공정경쟁 심사기준 1

가. 시장의 진입과 퇴출에 관한 공정경쟁 심사기준

(1)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시장진입과 퇴출조건의 설정금지

① 명백히 불필요하거나 또는 실제로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시장진입과 퇴출조건을 설치하거나 경영자가 시장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배척 또는 제한하는 것, ② 법률법규상 근거 또는 국무원의 규정 없이 지역, 조직형태에 따라 경영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여 불평등한 시장진입과 퇴출조건을 두는 것, ③ 법률법규상의 근거 또는 국무원의 규정이 없이 등록, 등기, 명단등록, 연도검사, 감독과 제재, 인정, 인증, 심정, 지정, 번호부여, 증서교환, 하부조직의 설립요구 등의 형식으로 시장진입의 제한을 설정 또는 우회적으로 제한을 설정하는 경우, ④ 법률법규상의 근거나 국무원 규정 없이 경영자간의 경쟁의 시장진입이나 퇴출조건을 삭제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

(2) 공정한 경쟁을 통하지 않고 경영자에게 특허경영권을 부여하는

¹ 실시의견에서 제시된 기준들은 예시적인 것으로 아래 항목의 내용을 포함하나 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 본문에서 "양괄호()"로 표기되어 있는 목차 수준의 기준이 모두 18개인데 이를 "18조기준"(18条标准)이라고 표현합니다.

행위

① 일반적인 경쟁영역에서 특허경영을 실시하거나 또는 특허경영의 명의로 새로운 행정허가를 증설하는 경우, ② 특허경영기한을 명확하게 하지 않거나 또는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허경영기한을 연장하는 행위, ③ 입찰경매, 경쟁적 협상) 등의 경쟁방식을 거치지 않고 특정경영자에게 특허경영권을 부여하는 행위, ④ 차별적 조건을 설정하여 경영자로 하여금 특허경영권 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특정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경영, 구매, 사용의 제한금지

① 명시적 요구, 묵시적 암시, 거절 또는 행정심사비준의 연기, 중복심사, 플랫폼 또는 인터넷으로의 접속금지 등의 방식으로 특정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경영, 구매, 사용을 제한하거나 변칙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경매입찰절차에서 입찰자의 소재지, 회사의 소유제, 조직형태를 제한하거나 잠재적인 입찰자가 경매입찰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배척 또는 제한하는 행위, ③ 법률법규의 근거 없이 프로젝트 리스트, 명단 등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잠재적인 경영자의 상품과 서비스를 배척 또는 제한하는 행위

(4) 법률법규의 근거 없이 심사비준 또는 행정심사비준의 성격을 가진 사전 등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

① 법률법규의 근거 없이 행정심사비준 사항을 추가하거나 행정심사비준 단계, 조건이나 절차를 추가시키는 행위, ② 법률법규의 근거 없이 행정심사비준 성질을 가지는 전치등록절차를 마련하는 행위

(5) 시장진입에 관한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산업, 분야, 업무 등에 심사비준 절차를 추가하는 행위. 주로 법률법규의 근거나 국무원의 결정 없이 진입금지, 시장주체자격의 제한, 지분비율의 제한,

경영범위의 제한과 비즈니스 모델 등의 방식을 제한하거나 직접 또는 변칙적으로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나. 상품과 요소의 자유이동 기준(제15조)

(1) 외지로부터 들어오거나 수입된 상품과 제품에 대해서 차별가격과 차별적 보조정책을 실시하는 행위

- ① 정부가격 또는 정부지도가격을 제정하고 외지로부터나 들어오는 동 종류의 상품, 서비스에 대해 차별적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 ② 관련 상품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을 지불할 때에 외지의 동종상품 서비스와 수입되는 동종의 상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2) 외지로부터 들어오거나 수입된 상품과 서비스의 해당지역 진입 제한, 또는 해당지역 상품의 국외운송, 서비스의 수출 제한금지

- ① 외지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해당지역의 동종의 상품, 서비스와 다른 기술요구, 검수기준, 또는 중복검수, 중복인증 등의 차별적 기술조치를 규정하는 것, ② 수입제품에 대해 해당지역의 동종의 상품과 다른 기술요구, 검수기준, 또는 중복검수, 중복인증 등의 차별적 기술조치를 규정하는 것, ③ 법률법규의 근거 또는 국무원의 결정 없이 수입서비스에 대해 해당지역의 동일한 서비스와 다른 기술요구, 검수기준, 또는 중복검수, 중복인증등의 차별적 기술조치를 규정하는 경우, ④ 법률법규의 근거 없이 외지로부터 들어오거나 수입된 상품, 서비스에 대해 전매, 심사비준, 허가를 특별히 설정하는 행위, ⑤ 법률법규의 근거 없이 도로, 터미널, 항구, 공항 또는 본 행정구역의 경계에 세관을 설치하여 외지나 수입제품, 서비스가 본토시장에 진입하거나 또는 본토상품의 국외운송과 서비스의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 ⑥ 법률법규의 근거 없이 소프트웨어 또는 인터넷에의 접속차단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서

외지나 수입상품, 서비스의 해당지역으로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또는 해당지역 상품의 국외 반출 또는 서비스의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

(3) 외지의 경영자를 해당지역의 입찰경매활동에서 참여를 배척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금지

① 법에 따라 적시에 유효하게 입찰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② 외지의 경영자가 해당지역의 특정한 입찰경매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을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경우, ③ 외지 경영자에게 해당지역 경영자보다 현저하게 높은 자격요구 또는 평가심사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 ④ 입찰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특성과 실제적인 필요와 상응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의 이행과 무관한 자격, 기술과 비즈니스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외지의 경영자가 해당지역의 경매입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변칙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4) 외지 경영자의 해당지역에서의 투자 또는 하부조직의 설립을 배척, 제한 또는 강제하는 행위

① 외지 경영자의 해당지역에 대한 투자 또는 하부조직의 설립을 직접 거절하는 행위, ② 법률법규의 근거나 국무원의 규정 없이 외지 경영자가 해당지역에의 투자의 규모, 방식 및 하부조직 설립의 주소, 모델 등에 대해 제한을 하는 행위, ③ 법률이나 법규에 근거가 없이 외지 경영자가 해당지역에의 투자 또는 하부조직의 설립을 직접 강제하는 행위, ④ 법률법규의 근거 없이 해당지역에 투자 또는 하부조직의 설립을 해당지역의 경매입찰과 보조금 혜택과 우대정책의 필요조건으로 하여 외지 경영자의 해당지역투자 또는 하부조직의 설립을 변칙적으로 강제하는 행위

(5) 외지경영자의 해당지역에의 투자 또는 설립한 하부조직에 대해 차별적 대우의 금지

① 외지경영자의 해당지역 투자에 대해서 그 지역 투자자와 동등한 정책대우를 하지 않는 경우, ② 외지경영자가 해당지역에 설립한 하부조직에 대해 경영규모, 경영방식, 세금납부 등의 방면에서 해당지역 경영자와 다른 요구를 하는 경우, ③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안전생산, 건강위생, 공정품질, 시장감독 등의 방면에서 외지경영자가 해당지역에 설립한 하부조직에 대해서 차별적 감독관리기준과 요구를 시행하는 경우

다. 생산경영비용에 영향을 주는 행위 기준(제16조)

(1) 특정경영자에게 우대정책 실시 금지

① 법률법규에 근거나 국무원의 규정 없이 특정경영자에게 재정상의 인센티브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② 법률법규의 근거나 국무원의 규정 없이 특정경영자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행위, ③ 법률법규의 근거나 국무원의 규정 없이 우대가격으로 특정경영자에게 토지를 출양하거나 획발 또는 출자 등의 방식으로 특정경영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행위, ④ 법률법규의 근거나 국무원의 규정 없이 환경보호기준이나 오염물 배출권한 등의 방면에서 특정경영자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는 행위, ⑤ 법률법규의 근거나 국무원의 규정 없이 특정경영자에 대해서 행정사업성 비용, 정책성 기금, 주택공적금 등의 감면, 징수유예, 징수중단 등의 혜택을 주는 행위

(2) 특정한 기업에 대해 세수의 환급 또는 기업에 대해 재정상의 인센티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토지출양 수입을 감면해 주는 등의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행위

(3) 위법하게 특정경영자가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거나 납입유예의 금지. 주로 법률법규의 근거나 국무원의 규정 없이 경영자의 규모, 소유제 형식, 조직형식 지역 등의 요소에 따라 특정

경영자에게 납부책임이 있는 양로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공상보험료, 생육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거나 납부유예를 하는 행위

(4) 법률규정 외에서 경영자에게 각종 보증금을 제공 또는 공제의 금지

① 법률법규의 근거나 국무원의 규정 없이 경영자에게 각종 보증금의 납부를 요구하는 것, ② 경영자가 관련 절차를 이행하거나 관련 사항을 완성한 후에 제때에 경영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라. 생산경영행위에 대해 영향을 주는 행위 기준(제17조)

(1) 행정명령, 행정수권, 행정지도 또는 업종별 협회 등의 방식으로 경영자에 대해 독점합의를 하게하고 나아가 이를 시행하도록 강제, 조직, 또는 유도하거나 또는 경영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그리고 위법한 공시 또는 경영자에게 생산경영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위법하게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생산경영에 민감한 정보란 법률법규 또는 국무원에서 규정에 따라 공개할 필요가 있는 외에 생산경영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공개적인 채널을 통해서 수집할 수 없는 생산경영 데이터를 의미하며 주로 예정가격, 비용, 생산수량, 판매수량, 생산판매계획, 판매상정보, 최종고객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3) 권한을 초월한 정부가 가격 결정의 금지

① 정부지도가 가격제를 시행하는 상품,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② 해당지역 정부의 가격결정 목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거나 정부지도를 결정하는 행위, ③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등의 법률법규를 위반하여 가격에

간섭조치를 취하는 경우

(5) 시장조절가격을 시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수준에 대해서 위법하게 간섭하는 행위

- ① 상품과 서비스의 통일집행가, 참고가의 제정과 반포, ② 상품과 서비스의 최고가 또는 최저가 규정, ③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수준에 영향을 주는 수수료, 할인 또는 기타 비용에의 간섭

4. 공정경쟁심사의 예외규정(제18조)

정책제정기관이 정책조치에 대한 공정경쟁심사를 할 때에 일정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도 의견에 규정된 국가경제안전, 문화안전, 국방건설관련, 빈곤층을 돕기 위한 개발, 재난구조 등의 사회보장목적, 에너지 자원 절약, 생태환경보호 등의 사회 공공의 이익과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고 동시에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정책목표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것, 즉 관련 목표 시행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해당 정책 조치, ② 시장경쟁을 심각하게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경우, ③ 실시기한을 명확히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책제정기관은 서면심사 결론 중에 정책조치가 예외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설명하고 적용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예외 규정에 부합하는 상황과 조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추가해야 합니다(제19조). 정책제정기관은 매년 예외규정의 정책조치의 시행효과를 평가하고 서면평가보고를 작성하며 실시기한이 만료되었거나 예상되었던 효과에 도달하지 못한 정책조치에 대해서는 적시에 집행을 정지하고 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제20조).

5. 공정경쟁심사와 관련한 사회감독과 책임추궁

정책제정기관이 공정경쟁심사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심사기준을 위반하여 정책을 반포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정

책제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정책제정기관은 관련 상황을 조사해야 합니다(제21조). 또한 정책제정기관의 상급기관 또는 반독점법 집행기관에 고발을 할 수도 있는데 고발은 서면 형식으로 하고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상급기관이 파악한 사실관계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반독점법 집행기관은 필요한 조사를 진행합니다(제23조). 정책제정기관이 공정경쟁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정책조치를 반포한 경우에는 적시에 보충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기준에 위반한 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절차에 따라 집행을 정지하거나 관련 정책조치를 조정하며 정책조치를 집행정지 또는 조정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공개조례에 따라 사회에 공개합니다(제22조).

정책제정기관이 공정경쟁심사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심사기준에 위반하여 정책조치를 반포한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개정명령 책임이 있고 개정을 거절하거나 제때에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공무원법, 처분조례 등의 법률법규에 따라 징계를 합니다. 반독점법에 위반한 경우에는 반독점법 집행기관은 정책제정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에 집행정지 또는 정책조치에 대한 조정건의를 제안할 수 있으며 관련 처리결과와 건의는 법률법규에 따라 사회에 공개합니다(제24조).

Ⅲ.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본 실시세칙은 기업간의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에 종료된 제19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진입 전 차별제도의 철폐와 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개방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실시세칙 이전에 2016년 반포된 공정경쟁 심사에 관한 의견에 근거하여 도입된 공정경쟁심사제도는 그 긍정적인 측면과 필요성에 비해 기본적으로 정책제정기관의 "자체심사"라는 점, 이를 위반한 지방

정부부서에 대한 강제력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세칙을 통해 공정경쟁심사 제도의 실행 가능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적용가능성이 높아져서 향후 공정경쟁심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여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본 실시세칙은 예외조항을 두어 설사 어느 정도의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도 국가경제안전, 문화안전, 국방건설관련, 빈곤층을 돕기 위한 개발, 재난구조 등의 사회보장목적, 에너지 자원 절약, 생태환경보호 등의 사회 공공의 이익과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시장의 공정경쟁을 일부 손상시키는 경우라고 해도 실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바 불특정한 기준에 따른 정책제정기관의 자의가 개입될 소지도 있어 향후 공정경쟁심사제도의 시행에 따라 예외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본 실시세칙에 의하면 법률법규의 근거나 국무원의 규정 없이 특정 경영자에게 우대혜택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중국 지방정부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시행한 여러 가지 우대조치들을 규제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국에 투자하면서 중국 지방정부와 사이의 투자계약 등을 통하여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 조세 및 보조금 측면 등에서 혜택을 누려왔던 우리나라 기업들을 자신들이 누렸던 우대혜택들의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혜택이 유지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중국에 새로이 진출하면서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우대혜택을 기대하는 우리나라기업으로서 중국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우대혜택의 적법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 본 의견에 의하면 일련의 정책의 시행이나 법규의 반포에 있어서 사회 일반

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나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공정경쟁에 관한 정책의 실시현황과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 관계당국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CONTACT

변응재 변호사	02-528-5797	ujbyun@yulchon.com
허욱 변호사	+86-185-0085-2518	whuh@yulchon.com
김중부 중국 변호사	02-528-5043	zfjin@yulchon.com
태충남 중국 변호사	+86-135-0115-0852	taizhn@yulchon.com
백혜 중국 변호사	02-528-5072	hbai@yulchon.com